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주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294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3.

발 의 자:이주환·엄태영·최승재

배준영 • 윤창현 • 김기현

양금희 · 지성호 · 한무경

이태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16조 및 제58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,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하는 자를 지도·감독할 수 있음.

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 관계 공무원의 현장 지도·감독을 거부하더라도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,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의 효과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또한 직업훈련의 적법한 집행을 위해 부정훈련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등 제재조항이 있으나,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외의 강사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제재조항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, 부정수급

에 관한 추가징수 규정을 처분대상 및 부정수급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규정을 수정하여 대상이나 액수에 관계없이 최대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을 위탁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·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16조제2항제6호 등).
- 나.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이 부정훈련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5조의2 신설).
- 다. 부정수급액 등의 추가징수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6조제 3항).
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·감독을 거부·방해·기피한 경우
- 제19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8.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·감독을 거부·방해·기피한 경우 제24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8.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·감독을 거부·방해·기피한 경우

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5조의2(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 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제16조제1항, 제19 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강의제한 기간, 강의제한 대상과정 등은 고용노동

부령으로 정한다.

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거짓"을 "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"으로, "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"를 "금액의 5배 이하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부정수급액 추가징수에 관한 적용례) 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
는 융자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	제16조(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
등) ① (생 략)	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	2
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	
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	
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	
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	,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	
약을 해지하여야 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6</u> .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
	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
	나 관계공무원의 지도・감독
	<u>을 거부·방해·기피한 자</u>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9조(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・	제19조(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・
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	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
인정취소 등) ① (생 략)	인정취소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	2
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	
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	

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 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 소하여야 한다.

1. ~ 7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③ ~ ⑤ (생 략)

- 제24조(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 인정 및 인정취소 등) ① (생 략)
 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~ 7. (생 략) <신 설>

	1. ~ 7.(현행과 같음)
	8.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
	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
	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·감독
	을 거부·방해·기피한 경우
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	24조(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
	인정 및 인정취소 등) ① (현
	행과 같음)
	②
	·

- 1. ~ 7.(현행과 같음)
- 8.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

③ ~ ⑤ (생 략) <u><신 설></u>

제56조(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) ① · ② (생 략)

③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받은 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

<u>나</u> 관계 공무원의 지도·감독 을 거부·방해·기피한 경우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35조의2(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) ① 고용노동부장관 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 력개발훈련교사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 런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제 16조제1항, 제19조제1항 및 제2 4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강의제한 기간, 강의제한 대상과정 등은 고용노 동부렁으로 정한다.

제56조(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) ①·② (현행과 같 음)

O						
	고용노	동부	렁으로	<u> </u>	정하	는
바에	따라	거짓	<u> </u>			
	-	금액의	1 5배	이경	5}	

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.

- 1.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 <삭 제> 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19조 제2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 라 인정이 취소된 자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.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 우: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
 - 나.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 우: 그 금액 이하의 금액
- 2. 제55조에 따라 지원ㆍ융자 <삭 제> 또는 수강이 제한되는 근로자 나 사업주, 사업주단체등, 산 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: 부정 수급액 이하의 금액

④ ~ ⑥ (생 략)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